



RAISE THE WAGE LA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 관련 정보



최저임금 조례

2016년 7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로 1주일간 2시간 이상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할 경우 로스앤젤레스의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유급 병가

유급 병가 지급 방법:

- 1) 연초 발생: 매년 48시간, 또는
 - 2) 누적 발생: 근무 30시간 당 1시간
-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는 다음 연도에도 유효하며 최소 72 시간으로 제한 가능합니다.



청적임금과 유급 병가 유예신청

2016년 7월 1일부터,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25명 이하일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가 적용됩니다.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비영리 단체는 최저임금 유예신청을 할수 있으며 자격 심사 합격 여부에 따라 유예자격이 주어집니다.



위반신고

최저임금 위반 또는 보복 행위에 대한 고발은 임금표준 부서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온라인 또는 MyLA 311 app 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 | 7/1/17 | 7/1/18 | 7/1/19 | 7/1/20 | 7/1/21 | 7/1/22 | 7/1/23 | 7/1/24 |
|--|---------|---------|---------|---------|---------|---------|---------|---------|
|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고용주 | \$12.00 | \$13.25 | \$14.25 | \$15.00 | \$15.00 | \$16.04 | \$16.78 | \$17.28 |
| 직원 수가 25명 이하인 고용주 또는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비영리 단체로 최저임금 유예자격이 승인된 경우 | \$10.50 | \$12.00 | \$13.25 | \$14.25 | \$15.00 | \$15.00 | \$16.78 | \$17.28 |

자세한 내용은 임금 표준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844-WAGESLA (924-3752) ✉ WAGES@LACITY.ORG 🌐 WAGESLA.LACITY.ORG

미국 장애인법의 제 2조를 적용하는 기관으로써, 로스앤젤레스 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도시의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